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2021. 1.



Contents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제1장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개요

I. 가이드 배경 및 목적	08
II. 적용범위	09
III. 관련 법령	10
IV. SW사업 하도급 제도 개요	11
가. 하도급 제도 관련 법제도 현황	11
나. 하도급 제도 원칙	12
다. SW사업 하도급 제도 변경 전·후 비교	14
V. 적용시기	15
[참고용어]	

제2장 SW사업 추진 단계별 (재)하도급 승인 절차 및 방법

I. 사업계획수립단계	20
가. 하도급제도 적용대상 판단	20
나. 하도급 예상비율 산정	22
다. 하도급 제한 규정의 확인	23
라. 재하도급 제한 규정의 확인	30
마. 공동수급 활성화 고려	31
바. 제안서 평가기준 수립	33
II. 입찰공고단계	33
가. 하도급 제한원칙 및 법적 근거	34
나. SW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요청	34
다. 하도급 적정성판단 세부기준 명시	35
라. 공동수급체 구성 권고	42
마. 공동수급업체의 하도급 비율제한	43
바. 소프트웨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권고	44
사.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절차 안내	46
아. 하도급계약 준수여부 확인서 제출 안내	49
자.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 시정요구	49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제1장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개요

제1장

- I. 가이드 배경 및 목적
- II. 적용범위
- III. 관련 법령
- IV. SW사업 하도급 제도 개요
- V. 적용시기
- [참고용어]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개요

I 가이드 배경 및 목적

SW사업의 과도한 다단계 하도급 거래는 SW사업의 품질 저하, 중소SW기업 수익 악화와 SW기술자 처우악화 등 국내 SW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고 SW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전부개정(20년 6월)되었고, 「소프트웨어 진흥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어 '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본 가이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8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이하 '고시'라 한다)의 개정에 따라 발주기관과 SW사업자가 하도급 신청 및 승인, 하도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입찰 공고·계약체결·하도급 승인 및 하도급 관리 등 각 단계별로 준수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연혁

- 하도급 제한 규정 관련 법 제20조의3 개정 (15.12.31. 시행)
 - 수급인 하도급비율(50%) 제한,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공동수급 활성화
- 법에서 위임한 재하도급 제한 및 공동수급체 참여 비율 관련 영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신설 (15.12.31. 시행)
 - 재하도급 금지의 예외사유, 재하도급비율(50%) 초과 제한
 - 공동수급자로 참여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자의 사업금액 비율(10%) 신설
- 법에서 위임한 하도급 제한 예외사유 및 하도급 승인절차 관련 규칙 제7조의2 및 제8조 개정 (15.12.31. 시행)
 - 수급인 하도급비율(50%) 초과제한의 예외사유(신기술, 전문기술)
 - 하도급의 승인 방법 및 절차 등의 관리
- 모법인 법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하도급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고시 전부 개정 (15.12.31. 시행)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발주기관이 하도급을 관리하는 기준으로 전부 개정
 -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고시명 변경
- 물품의 유지관리 계약 등에 대한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고시 일부 개정 (18.3.8 시행)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 (20.12.10. 시행)
 - 하도급 대상 명확화(하도급 비율 산정 시 물품의 구매금액 제외 명시), 재하도급 금지 원칙의 예외사유 축소
 - 하도급 변경 승인 사유 추가(대기업의 (재)하도급 참여가 불가피한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제출 근거 규칙에 마련
 -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폐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전부개정

II 적용 범위

본 가이드는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소프트웨어사업에서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① “국가기관등”의 범위(법 제21조제4항, 시행령 제21조)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다만,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은 제외)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6.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공공단체

② “발주”의 의미

“발주”란 소프트웨어사업을 도급하거나 물품 및 설비의 구매, 설치·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거래하는 것
 ※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등 그 발주형태와 관계없이 국가기관등이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를 의미

③ “소프트웨어사업”의 정의(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

-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포함
-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

④ “도급”의 정의(법 제2조제12호)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⑤ “(재)하도급”의 정의(법 제2조제13호)

“하도급”이란 도급(또는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다시 도급(또는 다시 하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은 재하도급 → 다시 하도급, 재재하도급 → 또 다시 하도급이란 용어로 순화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해당 가이드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재하도급이란 용어를 사용 함



III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제48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정보통신융합법) 제15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및 제16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IV SW사업 하도급 제도 개요

가. 하도급 제도 관련 법제도 현황

< SW사업 하도급 제도 관련 법제도 현황 >

전부 개정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의 주요 내용	
1. SW사업자는 물품(상용 SW포함)의 구매 금액을 제외한 SW사업금액 50% 초과하여 하도급 금지 - 하도급 비율 제한 예외사유 ① 물품의 설치 및 유지 관리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50% 초과 가능	
2.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재하도급 허용 예외사유 ①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 또는 ② 하도급 받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재하도급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재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	
4. 사업금액의 일정비율을 초과(100분의 10)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참여 유도	
5.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제한 관련 지속적 관리·감독 의무 및 법률이 정한 사항의 시정 요구의무 명시	
전부 개정된 시행령 제48조의 주요 내용	전부 개정된 시행규칙 제14조의 주요 내용
- 하도급 비율 제한 예외사유(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절차
- 재하도급 허용 시 비율 제한(100분의 50)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제출 의무 명시
- 재하도급 허용 예외사유	
- 공동수급체 참여 위한 하도급 사업금액 비율(100분의 10)	

< 중소 SW사업자 사업 참여지원 제도(대기업 참여제한)와의 관련성 >

중소 SW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 제도 주요 내용
법 제48조에 따라 국가기관등의 장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금액 미만의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제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
대기업의 하도급(재하도급) 형태의 SW사업 참여시에도 적용 대상
(원칙)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법 제48조가 정한 사업금액 기준에 따라 참여가 불가능한 소프트웨어사업에 하도급(재하도급 포함) 형태로도 참여할 수 없음 - 예시 : 사업금액 30억원 사업에 중소기업이 주사업자로 사업을 수행, 매출액 7천억원인 대기업(40억원 이상 사업에 한하여 참여 가능)이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업체로 참여 → 허용하지 않음
(예외)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개발 운영 관리에 관한 사업에 한하여,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술적·관리적으로 대기업의 하도급(재하도급)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 단,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사유의 적절성 여부 평가 후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요청하여야 함
* 법적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및 [별표1]



나. 하도급 제도 원칙

- (하도급 비율 제한) 국가기관등과 SW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는 물품(상용 SW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 (하도급 비율 제한 예외)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신기술·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 ※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2항



주의

- 물품(상용SW포함) 구매 금액은 물품 공급관계에서 용역이 수반되지 않은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직접물품구매를 말합니다. 만일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구매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는 '하도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 하도급 비율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하도급 받은 SW사업자는 재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 (재하도급 금지의 예외)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하도급 받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재하도급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 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제4항



주의

- 재하도급 금지 예외에 해당하여 재하도급 하려는 경우 모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재하도급이 가능한 경우에도 하도급 받은 사업금액에서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재하도급은 불가

- (공동수급 활성화) 수급인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국가기관 등이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SW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 (하도급 관리 체계) SW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20조, 제23조



주의

-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시 개정으로 국가기관등의 장이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확인 시 직접 물품 구매 예정계획을 포함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SW사업 하도급 제도 변경 전·후 비교

< SW사업 하도급 제도 변경 전·후 비교표 >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하도급비율 제한	전체 사업금액의 50% 초과 금지 (부가세 포함)	물품(상용SW포함) 구매 금액을 제외한 전체 사업 금액에서 50% 초과 금지 *변경 전에도 비율 산정 방식은 동일하였으나,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원칙적 금지 (예외인정사유 축소)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 가이드에 명시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제한
하도급 계획서 제출	입찰 시, 계약체결 시 제출	계약체결 시 제출 ※ 입찰시 하도급 계획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받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하도급표준 계약서 활용	공정위 하도급표준계약서 활용 권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과기정통부장관이 마련 배포한 SW표준계약서 및 공정위 하도급 표준 계약서 활용 권고
하도급 승인 간소화 사유	1. 물품(상용SW 포함)의 단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으로 계약상대자가 계약 체결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2.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를 거친 결과 85점 이상으로 평가된 하도급 계약인 경우	1. 유지(동일) 2. 삭제(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이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으로 수정됨에 따라 삭제됨)
하도급 변경 승인요건	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승인받은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1, 2 동일 3. (추가)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개발·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으로 대기업의 하도급(다시 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 다만 3. 의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함
하도급 승인 재요청	국가기관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요청 가능	국가기관등의 장의 승인 없이 1회에 한하여 재요청 가능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 범위	하도급 또는 다시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준수여부 확인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및 직접 물품 구매 예정계획 포함
발주기관의 시정요구 범위	하도급 제한 비율 위반 및 재하도급 제한 위반 사항	재하도급 위반 및 하도급사전승인 위반 여부 추가

V 적용 시기

- 개정된 하도급 제도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SW사업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 ☞ 다만, 국가기관등의 장이 시행일 이전에 SW사업을 입찰 공고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릅니다.

[참고용어]

용어	설명
공동계약	“공동계약”이라 함은 SW사업의 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라 함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해당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공동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라 함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물품	“물품”이라 함은 하드웨어, 설비, 상용SW의 단순물품을 말하며, “물품”에는 SW사업을 위해 필요한 단순 조사업무와 외부자문을 포함한다. ※ 단,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상용SW는 제외
도급계약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그 밖의 명칭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매매계약	물품 등의 공급관계에서 용역이 수반되지 않은 물품의 공급거래 계약을 말한다.
상용SW	“상용SW”란 일반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되어 하나의 상품으로 출시되고 판매를 목적으로 완성된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공정위,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구축 분야)
커스터마이징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란 상용소프트웨어를 발주자의 설치환경에 정착/연동시키기 위하여 원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발주자가 원하는 형태로 재구성·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및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공정위,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구축 분야)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제2장

SW사업 추진 단계별
(재)하도급 승인 절차 및 방법

제2장

- I. 사업계획수립단계
- II. 입찰공고단계
- III. 입찰참여단계
- IV. 계약체결단계
- V. (재)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
- VI.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
- VII. 하도급 사전승인 통지의 기한
- VIII. 하도급 승인 재판단 요청



2

SW사업 추진 단계별 (재)하도급 승인 절차 및 방법

< 개요 >

단계	주체	절차	관련서류	관련 근거	가이드 자료
입찰공고	발주기관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제출 요청 및 ②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입찰공고문 • 제안요청서	고시 제19조	33쪽
입찰참여	입찰자	• (해당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입찰 시) 제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받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 한함	• (해당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입찰 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별지 제4호서식 • 물품 공급 약속서 등		
계약 체결	수급인	• 하도급계획 및 하도급 비용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첨부] ①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 ② 물품 공급 약속서 등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고시 별지 제7호서식 - [첨부] ①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 ② 물품 공급 약속서 등	고시 제19조	51쪽
	발주기관	• 하도급계획서 및 비용 검토			
(재) 하도급 승인신청	수급인	• (재)하도급계약 승인신청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첨부] ①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②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포함,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시행규칙 제14조 고시 제20조	57쪽
적정성 평가	발주기관	•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 (일괄 또는 개별 승인)	• 하도급계약 적정성 평가 (일괄 또는 개별 승인)	고시 제21조	60쪽
재판단 요청	수급인	• 발주기관이 하도급 승인을 거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거절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재승인 요청 가능 ※ 국가기관등의 장의 승인 불요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첨부] ①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②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포함,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고시 제21조	69쪽



단계	주체	절차	관련서류	관련 근거	가이드 자료
하도급 계약체결	수급인	• 승인 시 하도급 계약 체결 ※ 재하도급은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 간 계약체결	• SW사업 하도급계약서 ※ 과기정통부 SW표준계약서 및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은 권고사항		51쪽
하도급 변경승인 신청	수급인	• 변경사유 발생 시 수급인 신청 후 발주기관 검토 및 승인여부 판단 ※ 사전승인 절차 준용	• 변경사유 증빙서류 • 변경 승인 신청서	고시 제22조	75쪽
준수여부 확인	발주기관	• 수급자 의견 청취 이후 준수여부 확인 실시 • 확인내용 검토 후 위반 시 시정조치 ※ 전자적으로 하도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 [첨부] ①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②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시행규칙 제14조 고시 제23조	72쪽

<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간소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단계	주체	절차	관련서류	고시	가이드 자료
입찰공고, 입찰참여, 계약체결 절차 기준과 동일					
(재)하도급 승인신청	수급인	• (재)하도급계약 승인신청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 신청서 ※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첨부] ①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②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포함,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시행규칙 제14조	57쪽
적정성 평가 생략 가능 / 적정성 평가 생략 시 승인신청과 동시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					
하도급 계약체결, 하도급 변경승인 신청, 준수여부 확인 절차 기준과 동일					



I 사업계획 수립 단계

가. 하도급제도 적용대상 판단

검토사항

- 추진하려는 사업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상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 적용대상 (모두 충족 시 적용) - 국가기관등이 수행하는 SW사업

국가기관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상의 하도급의 승인 및 관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시, 하도급·재하도급 제한 및 하도급·재하도급의 승인·관리에 관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상의 조항과 본 가이드 적용 대상에 해당

① 발주기관이 법 제21조제4항의 “국가기관등”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영 제21조)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한 금융기관은 제외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6.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② 발주기관이 추진하려는 사업이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 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③ 발주기관이 발주하려는 사업에서 하도급(재하도급 포함)거래가 예상되는지 확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소프트웨어 사업”은 폭넓게 정의되고 있으며, 세부적인 분류방식에 대하여 다음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수급인이 물품의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개념에 포함
- ‘물품 구매’와 ‘대가가 책정된 용역(설치, 커스터마이징 등)’이 함께 포함된 계약의 경우 해당 계약은 ‘하도급’에 포함

< 출처 : 공공부문 SW수요예보 사업 유형 >

구 분	정 의
정보전략계획 수립 사업	- 본격적인 정보화 사업의 추진에 앞서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정보화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EA, BPR, ISP 등 소프트웨어 개발·구축사업 전(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은 정보전략계획수립사업으로 포함시킴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해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 등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	- 소프트웨어 개발 완료 후 인도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위탁 운영하거나 사용자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소프트웨어 개선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또한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최적의 상태에서 활용·유지하기 위해 제공되는 제품지원, 기술 지원, 사용자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시스템 운용환경구축 사업	-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요구되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시설·설비(통신망, UPS, 항온항습기 등) 및 기본 SW(OS, 유틸리티, DBMS 등)설치 등의 제반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디지털 콘텐츠 개발서비스 사업	-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작·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문헌 등의 원시자료를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보존하고, 그 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헌 등을 문자입력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경우와 문헌 등을 페이지 단위의 스캐닝, 또는 촬영방식으로 디지털화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SW구매 사업 HW구매 사업	- 정보화 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정보화 사업을 위해 요구되는 하드웨어, 네트워크, 보안 장비 등을 구매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 하드웨어에 종속되어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일체형 솔루션 구매는 하드웨어 구매에 포함시킴



나. 하도급 예상비율 산정

검토사항

- 과업의 세부내역을 분석하여 하도급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하고 하도급 예상 비율을 산정
- 하도급이 예상되는 해당사업 금액이 사업금액의 10% 초과 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유도(공동수급)

- 입찰에 참여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제안요청서 내 과업의 세부내역을 분석하여 하도급이 발생할 수 있는 대상을 파악하고 하도급 예상비율을 산정합니다.
- 발주하려는 SW사업의 추진방안과 요구사항을 상세화합니다.

< SW사업 요구사항 분석·적용 절차 >



- SW사업의 구성요소별로 하도급이 일어날 수 있는 예상비율을 산정하여, 각 요소별로 하도급 가능여부를 점검하고 공동수급체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 ※ (참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 SW사업자(수급인)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여 제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SW사업자(수급인)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활성화를 통해 중소SW기업의 지위가 원수급자로 향상되고, 사업 수행 경험을 축적하여 중소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 제한 규정의 확인

검토사항

- 하도급 규정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시 SW사업자가 준수하도록 계획단계부터 검토·적용하여야 함
- 사업금액 50% 초과 하도급 금지 및 예외사유 개별 사항의 유무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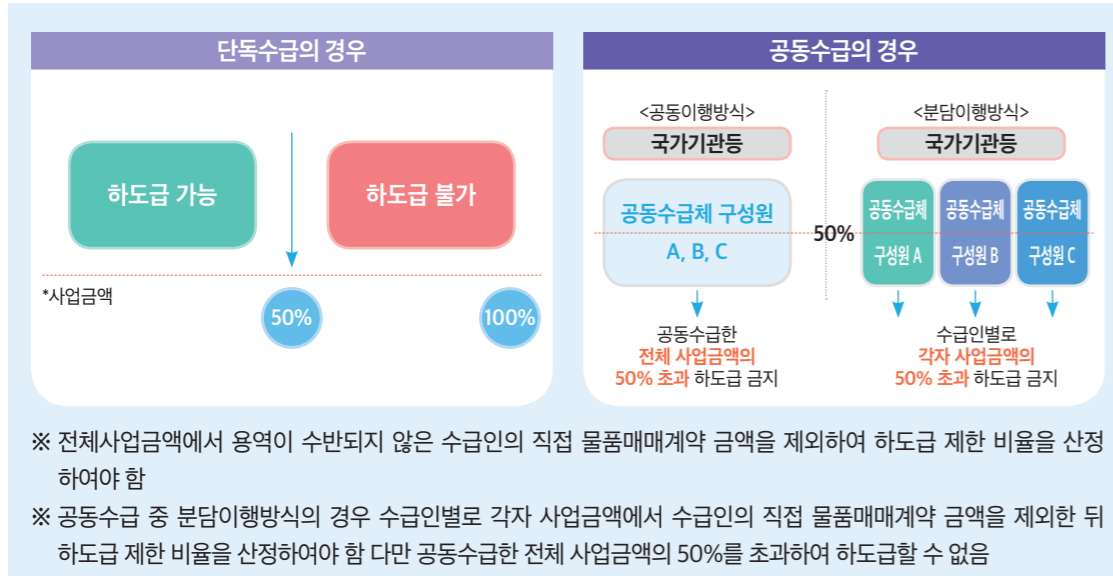
- 발주기관은 아래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시 SW사업자가 준수하도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 SW사업자가 발주기관과 SW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의 구매금액을 제외한 SW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법 제51조제1항).



주의

- '물품'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하드웨어, 설비 및 상용SW의 '단순 물품'을 말함, 다만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상용SW는 제외하며, SW사업을 위해 필요한 단순 조사업무와 외부자문 또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물품 구매금액'은 물품 공급관계에서 용역이 수반되지 않은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직접 물품구매금액에 한함, 만일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구매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금액은 제외하지 않음

- ★ '물품 구매금액'에는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의 SW사업을 위해 필요한 단순 조사업무와 외부자문에 관한 직접 계약금액도 포함

< 수급형태별 하도급 제한 비율 적용예 >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법 제51조제2항).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대통령령(영 제48조제1항)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가 물품의 구매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전체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 가능

**주의**

하도급 50% 비율 초과 사유로 적정한 경우일지라도, 품목별 누적이 이미 50% 초과한 상태에서 품목을 더 추가하는 경우 하도급 비율 제한 규정(100분의 50)에 따라 하도급 승인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 SW사업자(수급인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른 SW사업자에게 전체 사업금액의 55%를 차지하는 서버 구매 위탁계약(하도급 비율 제한 예외 포함되는 사항)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미 50%의 하도급 비율 제한을 초과 하였으므로 이후 추가적인 하도급(예컨대 전체 사업금액의 5%를 차지하는 스토리지 구매위탁계약 등)은 하도급 비율 제한 예외사항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승인이 제한됨

● 하도급 비율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 제51조제5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시행령

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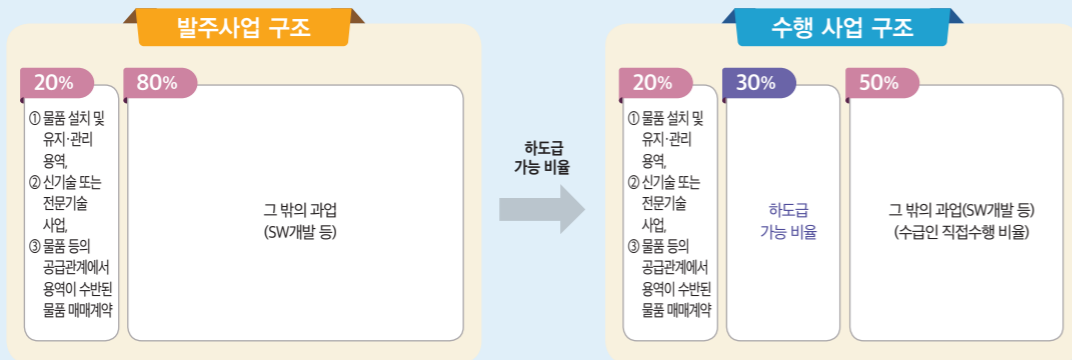
령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
 -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 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자목까지, 타목 및 파목의 경우와 관련된 사업 <이하 생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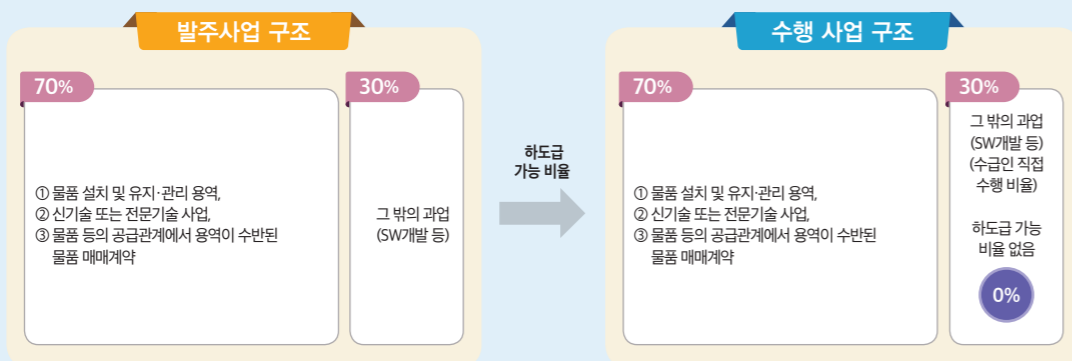
● 하도급 제한 비율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과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해당 과업에 대한 하도급 금액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은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 하도급 제한 비율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과업을 하도급 한 경우 >

사례1 예외사항 각호에 해당되는 과업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사례2 예외사항 각호에 해당되는 과업비율이 50% 초과인 경우



※ 물품은 하드웨어 설비 및 상용소프트웨어를 말하며, 커스터마이징이 포함된 상용소프트웨어는 제외함
 ※ 하도급 50% 초과 사유로 적정한 경우에도 품목별 누적이 50% 초과한 경우에는 품목을 추가시 50% 초과 규정에 따라 하도급 승인이 제한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이 포함된 계약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고시 제20조)하고 있고, 하도급 계약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발주기관은 이를 통해 하도급 제한비율 관리가 가능합니다.

참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관련 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유망 기술·서비스 등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서비스를 활성화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 연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등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지정 방법, 지원 범위 및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7조(임시허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등(이하 "임시허가"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관계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허가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임시허가를 위하여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거나 해당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⑧ 임시허가를 받아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그 기술·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은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효기간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안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안에 걸린 기간은 해당 기간에서 제외하되 이 경우라 하더라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결과를 붙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 여부를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2. 관련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3.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4.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적정성
5. 그 밖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⑦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신청, 통지,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발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기술(이하 "인증신기술"이라 한다)을 실증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 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이하 "신기술적용제품"이라 한다)으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확인 기준·대상·절차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 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술'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중략>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자목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중략>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중략>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략>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재하도급 제한 규정의 확인

검토사항

-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확인하고, SW사업자가 준수하도록 계획단계부터 검토·적용하여야 함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및 예외사유 확인

● 발주기관은 아래의 재하도급 제한 규정을 확인하고, 이를 사업추진시 SW사업자가 준수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고려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도급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하도급할 수 있습니다(법 제51조제3항 각 호).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영 제48조제1항제1호)으로 정하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
 -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 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영 제48조제4항)

**주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전면개정으로 재하도급이 가능한 예외사유가 일부 삭제되었습니다.
- 기존의 재하도급 인정 예외사유인 ① 하도급받은 사업의 품질 또는 수행 능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및 ② 과업의 변경 등 하도급받은 사업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③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모두 삭제됨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시행령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8조(하도급 제한 등) ① 법 제5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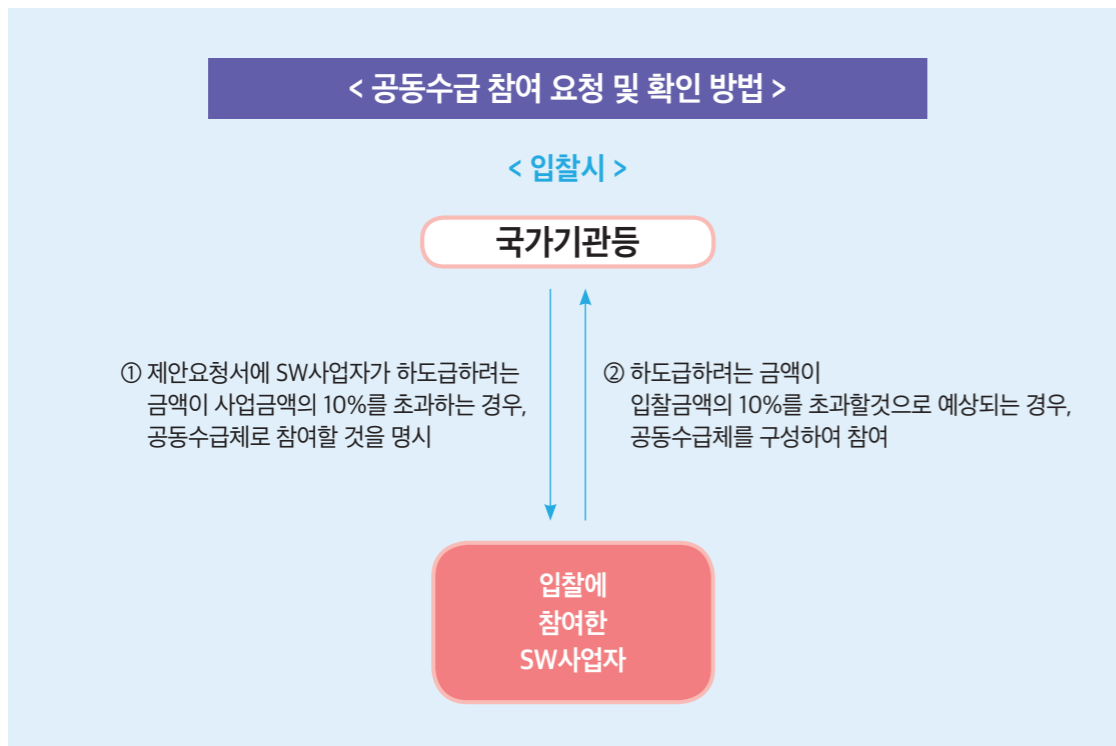
1.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보통신융합등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사업
 - 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유망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디지털콘텐츠를 포함한다)
 - 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 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 필요한 사업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차목까지의 경우(특정인과의 학술 연구를 위한 용역 계약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관련된 사업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바목부터 차목까지, 타목 및 파목의 경우와 관련된 사업
 - ②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③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 ④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상용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 ⑤ 법 제5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마. 공동수급활성화 고려

검토사항

- 수급인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국가기관등이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입찰 공고시 요구할 수 있고, SW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시 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SW사업자(수급인)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10%(부가세 포함)를 초과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입찰 공고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51조제6항 및 영 제48조제5항).
 - 이 경우, 요청받은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하도급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도록 입찰 공고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입찰안내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제안서 평가기준 수립

- 현재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항목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발주기관이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 시 신용등급이나 재무상태 등에 높은 배점을 하여 기술보다는 기업규모 등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것을 지양하고,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항목의 배점 상향 등의 방법을 통해 개정 하도급제도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II 입찰공고 단계

- 발주기관은 SW사업의 입찰공고 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입찰 시 공고 사항 >

구분	공고사항	법적 근거
①	하도급 및 재하도급 제한 법적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 제2항
②	하도급 사전승인 및 SW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및 제21조
③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 세부기준 명시 (※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기준 명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제1항
④	공동수급체 구성권고 및 참여기준 * 하도급 금액비율 제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공동계약운영요령」
⑤	위반 시 시정요구 및 근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3조



가. 하도급 제한원칙 및 법적 근거

- 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시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됨을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RFP)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다만,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SW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를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는 ‘입찰 시’와 ‘계약체결 시’에 따라 별도의 서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계약 상대자가 작성하여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각 구성원 전원 날인



주의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개정(‘20.12.24 시행)으로 입찰시에 제출했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에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 한하여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 해당 서식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제출요청

- 낙찰자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전체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도급 금액 및 비율 등 “하도급 예정계획”을 기재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
2	하도급사업수행계획(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3	물품 공급확약서

※ 근거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고시 제19조 및 별지 제7호서식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전체사업금액(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의 합계 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와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제출 요청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다.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을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기준 제시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안내

- 입찰자가 낙찰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준용합니다.

● 적정성 판단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자격의 적정성», 「수행능력의 적정성», 「계약의 공정성」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SW관련 인증이나 수상경력 등에 대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가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세부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자가 해외 사업자로 국내 법이 적용되지 않아 세부 판단항목을 판단하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합의를 통해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제출 요청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참고 1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I.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II.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 이상	100% 미만~ 80% 이상	80% 미만~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 이상	70% 미만~ 60% 이상	60% 미만~ 50% 이상	50% 미만~ 40% 이상	40% 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III. 계약의 공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㉔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㉕ 지급시기, ㉖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㉔, ㉕, ㉖ 전부 일치 30점	㉔불일치 (㉕, ㉖일치 여부 무관) 0점	㉖는 일치하고 ㉕, ㉖ 중 1개 일치 15점	㉖는 일치하고 ㉕, ㉖ 전부 불일치 0점		
		※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㉕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㉕와 ㉖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 이상 30점	95% 미만~90% 이상 25점	90% 미만~85% 이상 20점	85% 미만~80% 이상 15점	80% 미만~70% 이상 10점	70% 미만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IV. 기타

기타	가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참고 2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3호)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업명		하도급 사업명	
수급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도급 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단 항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가점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작성 예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① 사업명	○○○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⑦ 하도급 사업명	○○○ 정보시스템 개발사업의 기능 개발 사업
② 수급인	주식회사 ○○○정보통신 (전화) 02-○○○-○○○○	⑧ 하수급인	○○○시스템(주) (전화) 02-○○○-○○○○
③ 하도급예정액(A)	50,000,000원	⑨ 하도급계약 금액(B)	45,000,000원
④ 계약기간	2021.01.10.~ 2021.11.09.(10개월)	⑩ 하도급 기간	2021.07.10~ 2021.11.09.(4개월)
⑤ 하자담보 책임기간	사업 종료한 날부터 1년	⑪ 하자담보 책임기간	○○○ 정보시스템 개발사업 종료한 날부터 1년
⑥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협상에 의한 계약, 95%	⑫ 부분하도급률 (B/A)	90%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 ① 사업명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에 체결한 사업 계약명을 기재함
- ② 수급인 : 국가기관등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기재함 (공동계약인 경우 하도급 주려는 자인 공동수급 구성원을 기재함)
- ③ 하도급예정액(A) : 수급인이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시에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계약 체결시)*」에 명시한 '하도급예정액'을 말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별지기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④ 계약기간 : 국가기관등과 체결한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금액을 기재함
- ⑤ 하자담보 책임기간 : 국가기관등과 체결한 계약서상에 명시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기재함
- ⑥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 국가기관등이 당해 사업의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된 낙찰자 선정방식을 기재함, 낙찰률은 (계약금액/예정가격)×100 으로 계산하며 예정가격을 모르는 경우 공고금액으로 계산함
- ⑦ 하도급 사업명 :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체결한 사업 계약명을 기재함
- ⑧ 하수급인 :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 사업자를 기재함
- ⑨ 하도급계약금액(B) : 실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하도급 금액

- ⑩ 하도급 기간 : 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상에 명시된 계약금액을 기재함
- ⑪ 하자담보 책임기간 : 수급인과 체결한 하도급 계약서상에 명시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기재함
- ⑫ 부분하도급률 :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시에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에 명시한 '하도급 예정액' 대비, 실제 수급인과 하수급인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하도급 금액의 비율로서 상기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결과를 백분율로 기재함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 금액(B) / 하도급예정액(A))×100
→ 위의 예시를 기준으로 (45,000,000원/50,000,000원)×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0	해당사항 없음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28	(40,500천원/45,000천원) × 100 = 90%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10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모두 고용보험 가입
	소 계	38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30	모두 일치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25	(45,000천원/50,000천원)×100 = 90%
	소 계	55	
4. 기타	가점	① 2	(가점사유) 2020년에 SW품질인증(GS) 획득
		② 1	(가점사유) ○○○시스템(주)가 2020년에 미래부 장관상 1회 수상
	소 계	3	
합 계		96	

- 위에서 설명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의 평가 방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평가하여 자체 평가 점수를 작성하며 수급인이 이를 검토한 후에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하도급 승인을 요청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 권고

- 국가기관등의 장은 SW사업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 시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참여할 것을 입찰 공고시 요청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입찰공고에 명시 하여야 합니다.
 - 이를 통해 하도급자로 참여하던 중소SW기업이 공동수급체로 참여함으로써 경험을 축적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공동수급체 참여 기준

- 입찰자는 전체 사업금액(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유형 및 책임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유형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 이행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이행
책임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책임
자격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의 자격을 구성원 각각 구비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의 자격을 구성원이 공동으로 구비

※ 관련 법령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국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와 최소지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방식은 다음과 같다.
 - 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 나.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경우 : 5인 이하, 10% 이상(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중 추정가격이 1,0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10인 이하, 5% 이상)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제7장 공동계약 운용요령 참조

< 공동수급체의 유형 및 책임범위 >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유형	구성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이행	구성원이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이행
책임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책임
자격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의 자격을 구성원 각각 구비	인허가 면허 등록 등의 자격을 구성원이 공동으로 구비

마. 공동수급업체의 하도급 비율제한

-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 구성방식에 따라 하도급 비율제한이 적용되는 기준을 명시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공동수급체의 하도급 비율 기준 안내

- 입찰자가 공동수급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하도급 제한비율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기준금액	공동수급한 전체 사업금액	각 구성원별로 분담한 사업금액
하도급 제한비율	전체 사업금액의 50% 초과 금지 (구성원별 하도급 비율은 상호협약)	각 분담액의 50% 초과 금지 (이 경우도 전체 사업금액의 50% 초과 금지)
하도급 계획서 제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SW사업 하도급 계획서 제출	구성원이 각각 하도급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도급계약 승인신청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	구성원이 각각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

※ 관련 법령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한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때 공동수급체 구성원들간 하도급 비율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 하도급·재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은 대표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발주기관에게 신청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분담한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 ※ 이 경우에도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참고 | **공동수급체의 하도급 제한비율**

<공동수급체의 하도급 제한비율>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국가기관등</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margin: 5px;"> <p>공동수급체 구성원 A, B, C</p> </div> <p style="font-size: 24px; margin-left: 20px;">50%</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padding: 10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국가기관등</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30px; height: 30px;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text-align: center;"> <p style="font-size: 8px;">공동수급체 구성원 A</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30px; height: 30px;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text-align: center;"> <p style="font-size: 8px;">공동수급체 구성원 B</p> </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30px; height: 30px; display: flex; flex-direction: column;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text-align: center;"> <p style="font-size: 8px;">공동수급체 구성원 C</p> </div> </div> <p style="font-size: 24px; margin-left: 20px;">50%</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수급한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개별 구성원의 하도급 비율은 구성원간 상호협의를하여 정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수급인별로 분담한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 이 경우에도 공동수급한 전체 사업 금액의 50% 초과 하도급 불가

바. 소프트웨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권고

-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소프트웨어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도급계약서
-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관련 사이트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홈페이지(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

※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활용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구축 분야)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분야)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정보시스템 개발 구축분야)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 관련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정보공개 - 표준하도급계약서 게시판

-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하는 경우,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 이를 반영합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SW사업표준계약서 사용

- 입찰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다만,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활용가능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구분	제출서류
1	소프트웨어종사자(기간제, 단시간) 표준도급계약서
2	상용소프트웨어 공급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3	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4	정보시스템 개발구축 사업 표준계약서
5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표준계약서

※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

관련 사이트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홈페이지(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

구분	제출서류
1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구축 분야)
2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상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분야)
3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정보시스템 개발 구축분야)
4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분야)

※ 관련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관련 사이트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ftc.go.kr)-정보공개-표준하도급계약서 게시판



사.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절차 안내

-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승인절차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진행됨을 알려야 합니다.

< 하도급계약 승인절차 개요 >

수행주체	수행내용	관련서류	비고
수급인 (계약상대자)	• 하도급승인 신청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SW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하도급 금액 산출 명세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판단 자기평가표 (실적증명, 고용보험등 증빙서류) 	하도급 비율 50% 초과 시 예외사유 증빙
발주기관	• 하도급 제한비율 위반 시 반려 및 서류 미비시 보완 요청	• 제한규정 위반이유 및 관련서류 미비점에 대한 보완 요청	
발주기관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평가에 필요한 증빙 자료 	10일 내 서면 통지, 1회 연장가능 (미통지시 승인가간주)
수급인 (계약상대자)	• 승인 시 하도급 계약체결	• SW사업하도급계약서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사항
수급인 (계약상대자)	• 하도급 승인 거절시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 재판단 요청 (재판단 요청시 발주기관 승인 불필요)	• 하도급 승인 관련서류의 변경·보완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하도급 승인절차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분	하도급승인절차	관련 서식
1	• 수급인(계약상대자)은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SW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 하도급 적정성판단 자기평가표 (실적증명, 고용보험 등 증빙서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 • 발주기관은 10일 이내에 승인결과를 서면으로 통지(1회 연장가능, 미통지 시 승인가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평가에 필요한 증빙 자료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승인 후 하도급계약체결 • 하도급 승인 거부시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 재판단 요청 가능(재요청 관련 발주기관 승인 불필요) • 재판단 요청에도 거부된 경우, 수급인이 직접 해당과업을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의 보완 및 변경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SW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 하도급 적정성판단 자기평가표 (실적증명, 고용보험 등 증빙서류)

※ 근거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제21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계약상대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 승인을 거절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법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단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승인 계약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하도급을 승인 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계약 승인을 재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재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아. 하도급계약 준수여부 확인서 제출 안내

- 발주기관은 SW사업자가 승인된 내역대로 (재)하도급 계약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안내

- 발주기관과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 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포함)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및 별지 제22호서식, 고시 제23조제3항)

자.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 시정요구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도급 비율(사업금액 50% 초과) 제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재하도급 금지를 위반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에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발주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 위반시 시정요구

-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SW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3조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소프트웨어 진흥법

-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물품 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또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공고 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하도급 관리·감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 제23조(하도급 관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비율, 다시 하도급 여부 등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된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을 포함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도급 준수실태를 확인한 결과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III 입찰참여 단계



주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서식은 고시 통폐합에 따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이동하였으며, 기술성 평가항목 중 '하도급계획적정성' 평가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발주기관은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중 '하도급계획적정성'을 평가하려는 경우에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IV 계약 체결 단계

<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

구분	서식명	서식 근거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계약체결 시) (하도급 예정 계획, 직접물품 구매 예정 계획 작성)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증빙서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2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	[별첨 2]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예시) 참고
3	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별첨 3] 하도급 산출내역서(예시) 참고
4	사업추진 일정표	
5	물품 공급 약속서	

- 이 경우 발주기관은 SW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다음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금액 합계 비율은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부가가치세 포함), 다만 법 제51조제2항 각 호(하도급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참고 SW사업 하도급 계획서 작성예시(계약체결 시)

1. 하도급 비율 50%미만 사업 작성예시

[별지 제7호서식]

*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금액(C)	1,900,000,000원	사업기간	2021년 12월 ○○일 ~ 2022년 7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기업 A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서울 서초구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기업 A	기업 가	개발용역	10개월	105,000,000원	*② 8.08%
2	기업 A	기업 나	개발용역	8개월	94,000,000원	7.23%
3	기업 A	기업 다	연계SW 구매 및 설치	8개월	44,000,000원	3.38%
4	기업 A	기업 라	문서위변조방지 구매 및 설치	8개월	47,000,000원	3.62%
5	기업 B	기업 마	SERVER 구매 및 설치	8개월	210,000,000원	16.15%
6	기업 B	기업 바	Storage 구매 및 설치	8개월	50,000,000원	3.85%
합계				개월	550,000,000원	*③ 42.31%

*④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상용SW	ECM	사	1식	계약완료시까지	18,000,000원
2	상용SW	백신	아	1식	계약완료시까지	95,000,000원
3	HW	SERVER	마	1식	계약완료시까지	296,000,000원
4	HW	Storage	바	1식	계약완료시까지	58,000,000원
5	상용SW	PKI, 서버보안	자	1식	계약완료시까지	70,000,000원
6	상용SW	DB암호화, SSO	차	1식	계약완료시까지	28,000,000원
7	상용SW	이미지솔루션	카	1식	계약완료시까지	35,000,000원
합계						600,000,000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 - 물품구매 예정액(B)) ×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공동수급체 전체의 날인이 필요	년	월	일
	공공수급체 대 표 상 호 : 기업A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공공수급체 구성원 상 호 : 기업B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공공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 (서명 또는 인)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 설명 및 세부 작성 방법

본 사업은 000시스템 구축사업으로서 하도급 예정액과 물품 구매 예정액 그리고 자체 수행액을 합한 총 계약금액은 19억원입니다. 기업A와 기업B는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참여하였으며, 공동수급체 대표는 기업A입니다.

기업A는 개발용역을 포함한 4건, 기업B는 SERVER 구매 및 설치를 포함한 2건의 하도급을 예정하고 있고, ECM 등 총 7건(6억원)의 직접 물품 구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계약금액 19억원에서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금액인 6억원을 제외한 13억의 50%인 6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부분은 원수급자가 자체 수행해야 합니다.

공동이행 방식의 컨소시엄이므로 하도급 가능한 6억5천만원내 A와 B가 하도급 금액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에서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이 27.0%이기 때문에 그 밖에 하도급이 가능한 비율은 23.0%입니다.

*① - 사업과 수급인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 본 사업과 같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 계약금액대비 각 하도급액 비율을 기입합니다.

• 각 하도급 비율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해당 하도급 예정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 '기업 가'의 하도급 비율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frac{1억5백만원(기업 가의 하도급 예정액)}{19억(계약금액) - 6억(물품 구매 예정 총액)} \times 100 = 8.08\% = \text{하수급인 가의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③ - 계약금액대비 각 하도급 비율을 작성한 후 합계를 기입합니다.

• 총 하도급액 비율은 전체 계약금액에서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각 하도급 예정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 본 사업의 총 하도급 비율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frac{5억5천만원(하도급 예정액 합계)}{19억(계약금액) - 6억(물품 구매 예정액 합계)} \times 100 = 42.31\% = \text{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합계}$

*④ - 수급인이 직접 구매하는 단순 매매계약 내역을 기입합니다. 물품 구매 예정계획은 수급인이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에 한하며, 해당 금액은 하도급 비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물품 구매 예정에 기재한 내역은 물품 공급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하도급 비율 50% 초과 사업 작성예시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금액(C)	1,900,000,000원	사업기간	2021년 12월 ○○일 ~ 2022년 7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기업 A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서울 서초구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기업 A	가	DB암호화, SSO 구매 및 설치	8개월	140,000,000원	*① 10.8%
2	기업 A	나	이미지솔루션 구매 및 설치	8개월	84,000,000원	6.5%
3	기업 A	다	연계SW 구매 및 설치	8개월	70,000,000원	5.4%
4	기업 A	라	문서위변조방지 구매 및 설치	8개월	70,000,000원	5.4%
5	기업 A	마	ECM 구매 및 설치	8개월	126,000,000원	9.7%
6	기업 B	바	SERVER 구매 및 설치	8개월	210,000,000원	16.2%
7	기업 B	사	Storage 구매 및 설치	8개월	42,000,000원	3.2%
합계				개월	742,000,000원	*② 57.1%

*③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상용SW	연계SW	다	1식	계약완료시까지	58,000,000원
2	상용SW	문서위변조방지	라	1식	계약완료시까지	54,000,000원
3	상용SW	ECM	마	1식	계약완료시까지	12,000,000원
4	상용SW	백신	아	1식	계약완료시까지	10,000,000원
5	HW	SERVER	바	1식	계약완료시까지	300,000,000원
6	HW	Storage	사	1식	계약완료시까지	60,000,000원
7	상용SW	PKI, 서버보안	자	1식	계약완료시까지	70,000,000원
8	상용SW	DB암호화, SSO	가	1식	계약완료시까지	36,000,000원
합계						600,000,000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물품구매설치]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시 기입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 - 물품 구매 예정액(B)) × 100

-이하 생략-

사업 설명 및 세부 작성 방법

본 사업은 000시스템 구축사업으로써 하도급 예정액과 물품 구매 예정액 그리고 자체 수행액을 합한 총 계약금액은 19억원입니다.

기업A와 기업B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참여하였으며, 공동수급체 대표는 기업A입니다.

기업A는 DB암호화, SSO 구매 및 설치 포함한 5건, 기업B는 SERVER 구매 및 설치를 포함한 2건의 하도급을 예정하고 있고, 연계SW 등 총 8건(6억원)의 직접 물품 구매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총 입찰금액 19억원에서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금액인 6억원을 제외한 13억원의 50%인 6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으며, 초과하는 하도급 부분은 원수급자가 자체 수행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 만을 하도급하므로 예외사항에 해당되어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이 57.1%이며, 이미 50%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하였으므로 그 밖에 하도급이 불가능합니다.

① - 계약금액대비 각 하도급액 비율을 기입합니다.

- 각 하도급 비율은 전체 입찰금액에서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해당 하도급 예정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 '기업 가의 하도급 비율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frac{1억4천만원(기업 가의 하도급 예정액)}{19억(계약금액) - 6억(물품 구매 예정 총액)} \times 100 = 10.8\% = \text{하수급인 가의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② - 계약금액대비 각 하도급 비율을 작성한 후 합계를 기입합니다.

- 총 하도급액 비율은 전체 입찰금액에서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서 각 하도급 예정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합니다.
- 본 사업의 총 하도급 비율 산정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frac{7억4천2백만원(하도급 예정액 합계)}{19억(계약금액) - 6억(물품 구매 예정액 합계)} \times 100 = 57.08\% = \text{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합계}$$

*② - 수급인이 직접 구매하는 단순 매매계약 내역을 기입합니다. 물품 구매 예정계획은 수급인이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에 한하며, 해당 금액은 하도급 비율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직접 물품 구매 예정에 기재한 내역은 물품 공급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V (재)하도급 계약 사전 승인 신청

검토사항

- 모든 하도급은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입니다.
- 물품(상용SW 포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용역 및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도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 포함합니다.

< (재)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절차 개요 >

수행주체	수행내용	관련서류	비고
수급인 (계약상대자)	• 소프트웨어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제출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하도급 수행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등 포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권고) • 하도급 적정성판단 자기평가표 (실적증명, 고용보험등 평가 시 필요한 증빙서류 등)	• 하도급 비율 50% 초과 시 예외사유 증빙 • 재하도급시 예외 사유 증빙
발주기관	• (재)하도급 제한비율 위반 시 반려 및 서류 미비시 보완요청	• 제한규정 위반이유 및 관련서류 미비점에 대한 보완 요청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사항
발주기관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평가에 필요한 증빙 자료	10일 내 서면 통지, 1회 연장가능 (미통지시 승인간주)
수급인 (계약상대자)	• 승인 시 하도급 계약체결 ※ 재하도급은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 간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사항
수급인 (계약상대자)	• (재)하도급 승인 거절시 7일 이내 재판단 요청 가능(1회한도) ※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어도 재판단 요청 가능	• (재)하도급계약 승인 관련서류의 변경·보완	

- 발주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계약상대자)는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발주기관에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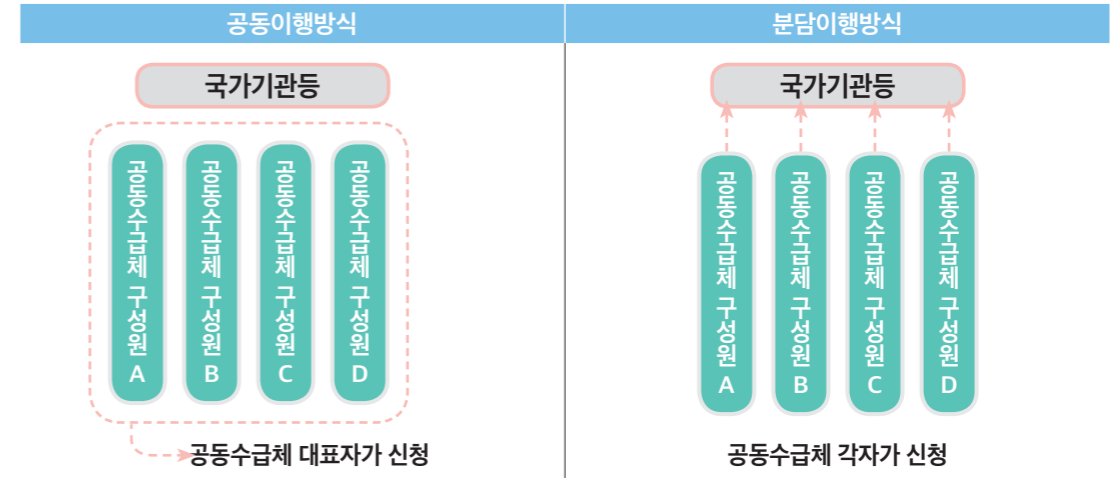
가. (재)하도급계약 승인 신청주체 및 승인주체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하도급 승인을 발주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재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수급인)가 발주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구분	서식명	서식 근거
1	소프트웨어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21호 서식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권고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21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3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하도급 (재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21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
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21호 서식에 따른 첨부서류
해당시	사업실적 증명서(SW산업정보종합시스템 www.swit.or.kr 발급) 또는 투입인력 실적증명서(SW산업협회 career.sw.or.kr 발급)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른 첨부서류
해당시	고용보험 증명서 ※ 한국고용정보원 발급	
해당시	가점 관련 증빙서류	
해당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에 해당되는 경우 증빙서류	

<공동수급체의 경우 신청주체>



- 하도급 및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주체는 발주기관인 국가기관등의 장이며, 계약상대자(수급인)의 (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을 받아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승인 신청의 주체는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이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개별 공동수급체 구성원입니다.

나. (재)하도급계약 승인 신청방법

-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여 (재)하도급계약 승인을 발주기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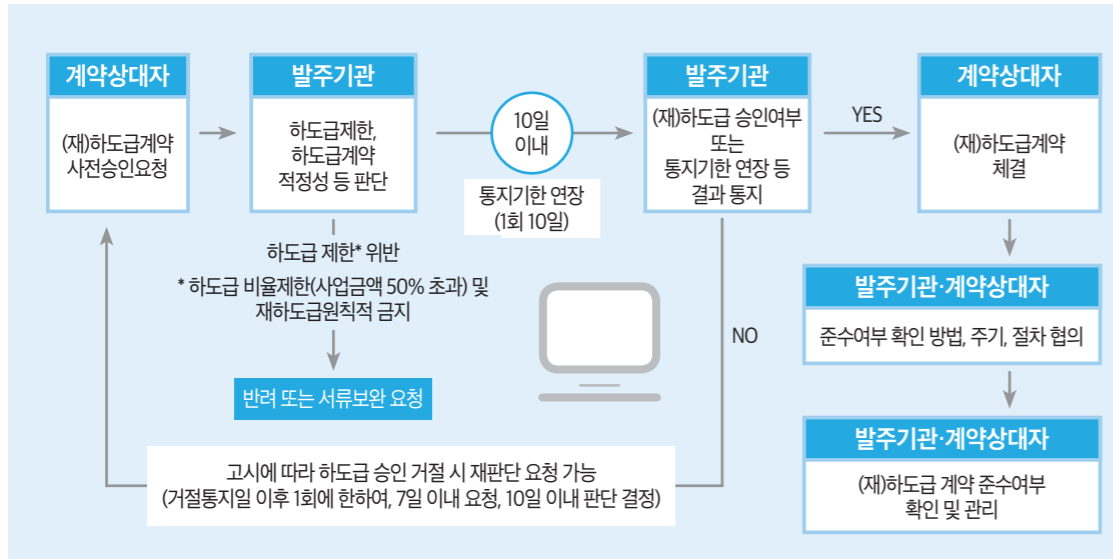
<신청 방법>

-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재)하도급계약 승인신청 관련 첨부서류를 동봉하여, 공문(우편, 메일, 팩스 등)으로 전송
-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승인신청 (<http://www.swit.or.kr>, 하도급계약승인)
- 조달청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승인신청 (<http://www.g2b.go.kr>)

<법적 근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 개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계약상대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 승인을 거절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법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단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승인 계약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하도급을 승인 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계약 승인을 재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재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VI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

- 계약상대자로 부터 소프트웨어사업 (재)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를 받은 발주기관은 (재)하도급 제한비율을 준수하는지 여부와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의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비율이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하도급계약 승인신청 접수를 반려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금액의 50% 초과 가능
-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재하도급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하도급받은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재하도급하는 경우에 이를 반려 또는 불승인을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신청인)에게 통지할 수 있습니다.
- 발주기관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제19조 관련)

I.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p>감점 (-25점)</p>

II.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p>㉠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p> <table border="1"> <tr> <td>100% 이상</td> <td>100% 미만~80% 이상</td> <td>80% 미만~60% 이상</td> <td>60% 미만~50% 이상</td> <td>50% 미만</td> </tr> <tr> <td>30점</td> <td>28점</td> <td>26점</td> <td>25~16점</td> <td>15점</td> </tr> </table> <p>㉡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p> <table border="1"> <tr> <td>70% 이상</td> <td>70% 미만~60% 이상</td> <td>60% 미만~50% 이상</td> <td>50% 미만~40% 이상</td> <td>40% 미만</td> </tr> <tr> <td>30점</td> <td>28점</td> <td>26점</td> <td>25~16점</td> <td>15점</td> </tr> </table> <p>※ 계약상대자는 ㉠,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p>	100% 이상	100% 미만~80% 이상	80% 미만~60% 이상	60% 미만~50% 이상	50% 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70% 이상	70% 미만~60% 이상	60% 미만~50% 이상	50% 미만~40% 이상	40% 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100% 이상	100% 미만~80% 이상	80% 미만~60% 이상	60% 미만~50% 이상	50% 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70% 이상	70% 미만~60% 이상	60% 미만~50% 이상	50% 미만~40% 이상	40% 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p>㉢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p>※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p>																				

III. 계약의 공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p>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p> <table border="1"> <tr> <td>㉣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td> <td>㉣, ㉤, ㉥ 전부 일치</td> <td>㉣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td> <td>㉣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td> </tr> <tr> <td>0점</td> <td>30점</td> <td>15점</td> <td>0점</td> </tr> </table> <p>※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p>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p>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p> <table border="1"> <tr> <td>95% 이상</td> <td>95% 미만~90% 이상</td> <td>90% 미만~85% 이상</td> <td>85% 미만~80% 이상</td> <td>80% 미만~70% 이상</td> <td>70% 미만</td> </tr> <tr> <td>30점</td> <td>25점</td> <td>20점</td> <td>15점</td> <td>10점</td> <td>5점</td> </tr> </table> <p>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p>	95% 이상	95% 미만~90% 이상	90% 미만~85% 이상	85% 미만~80% 이상	80% 미만~70% 이상	70% 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95% 이상	95% 미만~90% 이상	90% 미만~85% 이상	85% 미만~80% 이상	80% 미만~70% 이상	70% 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IV.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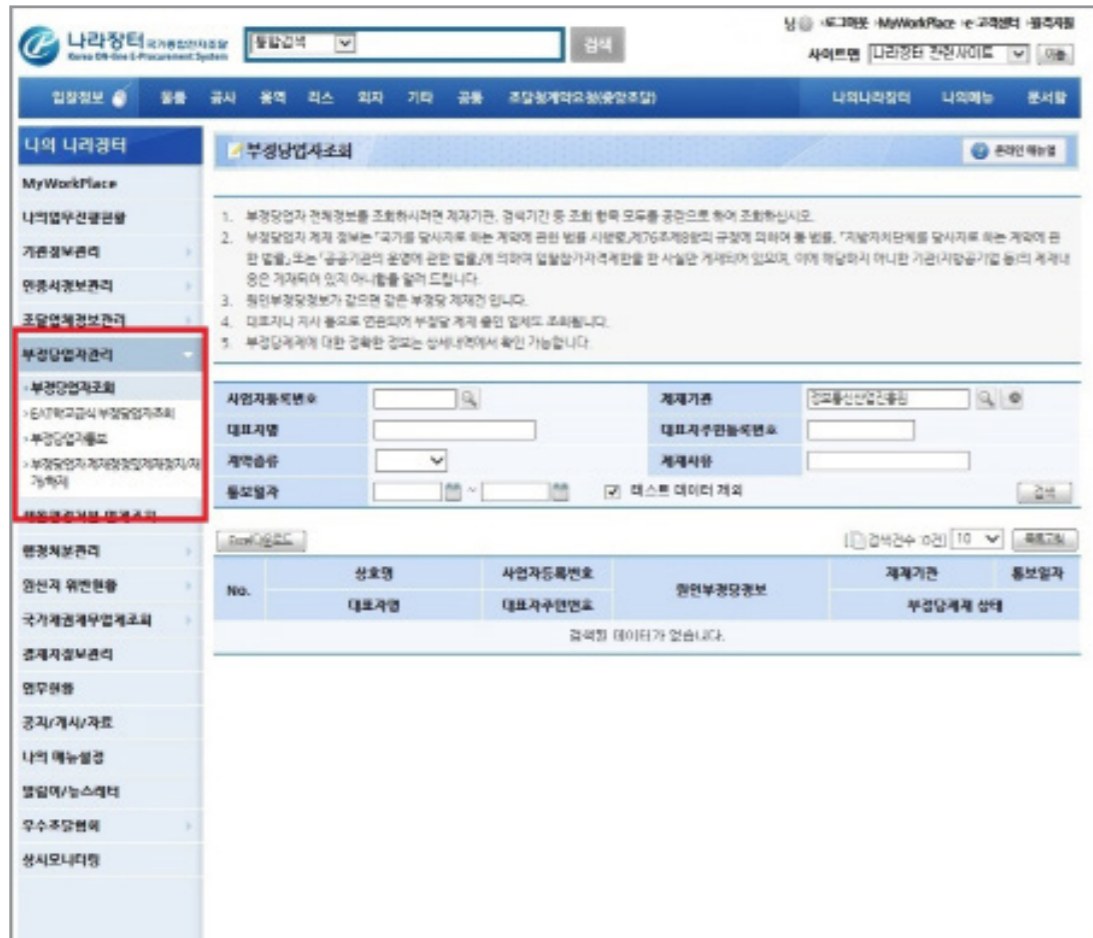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기타	가 점 (최대 5점)	<p>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p> <p>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p>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방법 >

I. 「자격의 적정성」 평가 방법

자격의 적정성 평가항목의 입찰참가제한여부에 대한 평가는 하도급계약을 수행하고자 하는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이 국가계약 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지정현황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의 수요기관 -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등에 접속하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업체정보 조회



※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기간 중일 경우 25점 감점합니다.

II. 「수행능력의 적정성」 평가 방법

-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판단 항목 중 사업수행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또는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중 신청인이 택일하여 판단을 요청합니다.

수행실적평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경력관리기관에 제출된 실적신고서[SW 산업협회가 발급한 사업실적 증명서(www.swit.or.kr), 투입인력 실적 증명서(career.sw.or.kr)]를 통해 평가하거나 이 법에 따른 실적증명방법에 따라 발주자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통해 실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시1) 당해 하도급계약의 예정금액이 10억원이고,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의 합산금액이 8억원일 경우 80%이므로 28점을 부여함

예시2) 당해 하도급계약의 참여인력이 10명이고, 10명 중에 유사사업 수행 경험이 있는 인력이 7명일 경우 70%이므로 30점을 부여함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하수급인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판단기준 및 평가방법은 하도급사업 수행계획서 상의 투입인력이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만점으로 평가하고 부적합할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회사대표가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에는 회사대표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은 제외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류는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III. 「계약의 공정성」 평가 방법

- 하도급 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30점)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평가는 원도급계약의 대금지급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방식의 일치 여부를 대금지급방식(현금인지 어음인지 등), 지급시기, 지급율(선금, 중도급, 잔금) 항목 중 몇 개가 일치하는지를 통해 판단하며, 국가기관등 및 원도급자간의 체결된 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단 대금지급방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시기와 지급율의 일치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합니다.

수급인이 국가기관등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보다 하수급인이 수급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국가기관등이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도 전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점(30점)을 부여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이 매월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해당항목을 평가합니다.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평가는 원도급 계약서(세부산출내역서)상의 하도급 되는 사업부분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와 하도급 계약서 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합니다.

다만 하수급인이 2개 업체 이상일 경우 통합하여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평가하지 않고 하수급인별로 각각 적정성을 평가합니다.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예시) 국가기관등 甲과 10억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A가 당해 계약에서 산출내역서 상의 5억(3억+2억)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하수급인 B, C에게 각각 2.7억, 1.8억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다면

⇒ 하수급인 B의 하도급예정액은 3억, 하도급계약금액은 2.7억, 부분하도급율은 90%

$(=\frac{2.7}{3} \times 100)$ 이 됨

⇒ 하수급인 C의 하도급예정액은 2억, 하도급계약금액은 1.8억, 부분하도급율은 90%

$(=\frac{1.8}{2} \times 100)$ 이 됨

※ 수급인이 하도급 사업에 대해 중간 이윤을 많이 남길수록 부분하도급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짐

IV. 기타

- 가점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해당 소프트웨어 인증을 획득한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에 가점을 2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수상경력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신청내용을 보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자가 수여 기관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회사의 경영활동 등에 수반된 수상경력만 해당되며 이와 관련이 없이 개인적으로 수상한 경력은 제외합니다.

소프트웨어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그리고 최근 3년간 수상 경력인 있는 경우 회당 최대 3점까지 받을 수 있어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발주기관이 (재)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승인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은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 판단 근거 >

서식명	법적 근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

< 법적 근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VII 하도급 사전승인 통지의 기한

- (재)하도급계약 승인신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계약 상대방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알려야 합니다.
- 다만, (재)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대하여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와 10일 이내의 연장된 통지기간을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발주기관이 승인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 10일인 통지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산합니다.
- 발주기관이 하도급 승인 여부를 거절하는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또는 재판단 요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예시) 2021년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4	15	16 하도급 승인신청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통지기한					

Timeline diagram showing 10 steps from Feb 16 to Feb 29. Step 1 is '하도급 승인신청' (Application for subcontract approval) on Feb 16. Steps 2-10 follow sequentially. A red arrow points to step 1, and a red arrow points to step 10, indicating a 10-day period.

- 발주기관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10일의 통지기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VIII 하도급 승인 재판단 요청

주요 개정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20.12.10 시행)으로 국가기관등의 장이 허용하지 않아도 1회에 한하여 (재)하도급 승인의 재판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재)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거절을 통보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1회에 한하여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재)하도급 승인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재판단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하도급 적정성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재)하도급계약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재판단 결과에도 (재)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거절을 통보받은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도급 승인을 요청한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 및 제21조 준용

< 법적 근거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제21조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제3장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관리

제3장

- I.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리의 목적
- II.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
- III. 하도급계약 변경승인 신청
- IV. 시정 요구 등



3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관리

I 하도급 및 재하도급 관리의 목적

- 시행되는 하도급 제도를 통해 발주기관은 하도급 승인 이후에도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획을 성실히 준수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함께 관리하여야 합니다.
- '20.12.10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도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확인 범위에 포함되어 관리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발주기관은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계약이행의 부실화 및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관행을 방지하여 건전한 SW생태계를 조성하고 SW사업구조의 건정성 및 사업 품질의 확보를 위하여 발주한 SW사업에서의 하도급 및 재하도급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II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



발주기관이 (재)하도급계약 승인 시 제출한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도 포함하여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확인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재)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거절을 통보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1회에 한하여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재)하도급 승인을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 개요 >

수행주체	수행내용	관련서류	비고
발주기관	• 수급자에게 사전 의견청취	• 하도급 준수 확인 보고주기, 방법, 범위 등에 대한 계획 안내 및 의견요청	전체 계약이행 과정에 대한 계획수립
수급인 (계약상대자)	• 준수 확인 계획에 대한 의견 제시	• 발주기관의 준수확인계획에 대한 회신	
발주기관	•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제출 요청	•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제출 요청 • 하도급 비율 제한관리 등 확인 항목 제시 • 증빙 및 제출 서류 안내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수급인 (계약상대자)	•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제출	•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제출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포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각 호
발주기관	• 보고내용 검토 및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요구	• 검토 결과 및 위반시 시정조치 공문	승인내역 대비 이행결과 확인 및 미이행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 발주기관은 (재)하도급계약 승인 이후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승인한 내용대로 (재)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를 계약상대자(수급인)에게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으로 (재)하도급계약 승인 시 제출한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도 포함하여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준수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을 정하여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3조제3항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계약체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다음의 제한범위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 주요 점검항목

- ① 50% 초과 재하도급 금지 위반여부
- ② 사업금액의 50% 초과 하도급 금지(부가세 포함) 및 예외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위반 여부
- ③ 재재하도급 금지 원칙 위반 여부
- ④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 위반 여부
- ⑤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의 대금지급 등 계약 준수 실태

III 하도급계약 변경승인 신청



하도급계약 변경승인 요건에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개발·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으로 대기업의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가 추가되었습니다.

< 하도급계약 변경승인 개요 >

수행주체	수행내용	관련서류	비고
수급인 (계약상대자)	• (재)하도급계약 변경승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업, 중대한 하자 발생,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 등 변경사유 및 증빙서류 • (재)하도급계약 변경신청서 (수행 계획서 및 산출내역서 등 포함)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권고) • 하도급 적정성판단 자기평가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제2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사유
발주기관	• 변경승인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기준 • (재)하도급계약 변경승인신청서 • 평가에 필요한 증빙 자료 	
발주기관	• 하도급 변경신청 검토 결과 통보	• (재)하도급 변경 승인 또는 거절 결과통보 공문	승인 거절시 이유 제시
수급인 (계약상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경승인시 하도급 변경 계약 체결 ※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 간 변경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권고) • 변경된 과업내역서, 세부 산출내역서 등 	

※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준용



-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다음 어느 하나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①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승인받은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③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개발·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으로 대기업의 하도급(다시 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 발주기관은 ③번에 따라 대기업이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으로 긴급참여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사유가 적절하지 평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 변경승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은 하도급계약 승인절차를 준용하여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하도급계약의 변경승인) ① 제21조에 따라 승인받은 하도급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승인받은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개발·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으로 대기업의 하도급(다시 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이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으로 긴급참여한 경우에는 법 제48조 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IV 시정 요구 등



주의

- 발주기관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위반사항이 확대되었습니다.
1) 재재하도급 금지원칙 위반과 2)하도급 사전승인 제도 위반의 경우도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위무사항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발주기관은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재)하도급계약 승인 이후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승인한 내용대로 (재)하도급계약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검토하여 승인한 내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준수 실태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전단의 「II. 하도급 준수여부 확인」 참조
- 또한 발주기관은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의무를 부담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발주기관의 소프트웨어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 의무 사항

- ① 하도급 비율 50% 초과 제한 규정 위반(법 제51조제1항)
- ② 하도급 비율 50% 초과 제한 규정 예외사유(대통령령으로 정한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위반 여부(동조 제2항)
- ③ 재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동조 제3항)
- ④ 재재하도급 금지 원칙 위반여부(동조 제4항)
- ④ 하도급 사전승인 제도 위반 여부(동조 제5항)

-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약칭) 및 지방계약법(약칭)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발주기관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는 경우에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과징금액수 등은 국가계약법(약칭) 및 지방계약법(약칭)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상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금액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금액이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하도급할 수 있다.

1.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하도급할 수 있다.

1.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하도급받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④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사업을 또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 ⑤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하도급하려는 경우와 제3항 단서 각 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입찰공고 시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금액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하도급 승인 방법 및 절차, 하도급 관리·감독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3조(하도급 관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비율, 다시 하도급 여부 등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된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을 포함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도급 준수실태를 확인한 결과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 법적 근거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3조제2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2

참고 SW하도급분쟁조정제도

- 하도급거래의 당사자인 수급인(원사업자)과 하수급인(수급사업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된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협의회'는 하도급거래 분쟁의 내용에 대해 사건 분쟁 당사자들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구로서 공정한 경쟁과 올바른 경쟁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자율조정기구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한국SW산업협회 SW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https://www.sw.or.kr>)

< 하도급 분쟁조정 절차 개요 >

수행주체	수행내용	관련서류	비고
SW사업자	• SW하도급 분쟁조정 신고	• S/W하도급 위반행위 신고서(공문) • 불공정하도급분쟁조정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대금내역, 세금계산서 등 사본 • 신고내용 관련 입증 자료	신고 취하 시 조정 절차 종료 및 공정위 결과보고
분쟁조정 협의회	• 변경승인 검토	• 신고서 검토 • 분쟁관련 자료 확인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정 범위만 사실이 없는 경우 공정위 결과보고 및 종결
	• 당사자 출석조사	• 출석 및 진술서	당사자 출석 시 조정안 제시
	• 조정안 심의의결	• 심의의결문	
SW사업자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	10일 내 서면 통지, 1회 연장 가능 (미통지시 승인간주)
분쟁조정 협의회	• 승인 시 하도급 계약체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표준계약서 사용은 권고사항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별첨

1. 제안요청서 작성 설명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수행계획서(예시)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산출내역서(예시)
4.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별지 제7호서식]
6.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별지 4]

별첨 1 제안요청서 작성 설명

● 하도급 관련 법령 및 주요내용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구매 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다만,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라도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재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이 허용된 경우에도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낙찰자인 SW사업자는 계약 체결 시 하도급 예정계획 등을 기재한 SW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제출서류 : 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②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③ 물품 공급확약서

●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안내

- 입찰자가 낙찰이후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합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합니다.

● 공동수급체 참여 기준

- 입찰자는 전체 사업금액(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 ※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

● 하도급 승인 신청 방법 안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하도급 승인 신청 시 제출서류
 - ① 소프트웨어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②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 ③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 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 추진 일정표 포함)
 - ④ 하도급 적정성판단 자기평가표
 - ⑤ 사업실적 증명서(www.swit.or.kr 발급) 또는 투입인력 실적증명서(career.sw.or.kr 발급)

●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제출 안내

- 발주기관과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이 승인 받은 대로 준수되고 있는지(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포함) 확인할 예정이며, 제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 ※ 관련규정 :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별지 제22호서식, 고시 제23조제3항
-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 확인 결과가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SW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반드시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 관련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3조제2항



별첨 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수행계획서(예시)

※ 본 자료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2017.9)-한국정보화진흥원」 [별지 제10호 서식 붙임5] 수행계획서의 내용을 차용하여 예시로 작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000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수행계획서

사업명	
-----	--

년 월 일
 (사 업 자)

1. 사업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가. 개발대상업무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상의 업무범위를 근거로 작성

나. 개발 및 운영환경

◎ 작성요령 : -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기타로 나누어 기술적인 사항을 개발기간 중과 개발 후 운영단계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기술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을 준수하여 기술

다.기 타

◎ 작성요령 : 인터페이스 관련사항, 표준화, 업무절차재구축, 초기자료구축 등 가, 나에 기술되지는 않았지만 업무의 범위를 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술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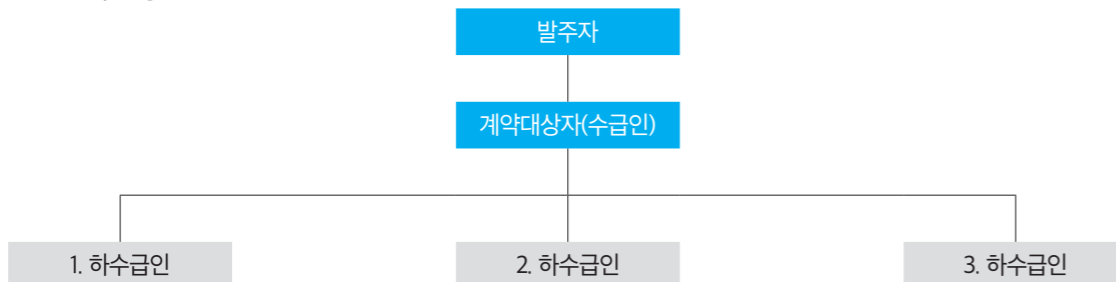
◎ 작성요령 :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주관기관의 검사 및 감독담당자가 명시되어야 함
- 감독 및 검사 담당자는 「전자정부지원사업 담당자 통보서」와 동일해야 함

나. 사업자 추진체계

- 사업자 조직도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이 명시되어야 함
※ 분리발주된 SW공급자와의 협력방안을 기술

- 임무분장



구분	하도급승인절차	관련 서식
1. 하수급인		
2. 하수급인		
3. 하수급인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참조]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행업무	산출물	비고

※ 기술용역개발사업의 경우 개발방법론을 사용한다.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일정, 제출부수 등의 제출계획을 기술
- 산출물목록 확인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종산출물 내역을 정의할 것

8. 일정계획

구분	M			M+1			M+2			M+n			비고
진척율													

◎ 작성요령 :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
- 주간단위(Time interval)로 작성하며,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활동보고, 위험관리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별첨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산출내역서(예시)

※ 본 자료는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2017. 9)」 [별지 제 10호 서식 붙임6]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차용하여 예시로 작성되었습니다.

○○○○년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산출내역서

사 업 명	
발주기관	

년 월 일
(사업자명)

1. 총괄표

(단위 :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사업금액	하도급금액	계
개발용역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		
	소계		
장비구입비	소프트웨어 구매		
	하드웨어 구매		
	기타		
	소계		
합 계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www.sw.or.kr)를 준용하여 작성
※데이터베이스 구축비는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대가기준 가이드" 준용하여 작성(한국정보진흥원)

2. 항목별 소요예산

가. 전체 항목별 소요 예산

(단위 : 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업무명 (대기능)	개발용역비				장비 구입비			합계
	SW 개발비	운영환경 구축비	DB 구축비	소계	SW	HW	소계	

※ 장비 구입비의 경우 명확하게 구분이 어려울 경우 별도 단위업무로 표기



3. 세부 산출 근거

1) 개발용역비

가. 소프트웨어 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비 고
개발원가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직접경비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이 윤	개발원가 × ()%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 <개발원가 산출내역>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 가능

• 개발규모 산정

- 신규/재개발 대상 기능점수 산정

기능유형	평균복잡도	평균복잡도		평균복잡도	
		기능개수	기능점수	기능개수	기능점수
내부논리파일(ILF)	7.5				
외부연계파일(EIF)	5.4				
외부입력(EI)	4.0				
외부출력(EO)	5.2				
외부조회(EQ)	3.9				
총합계					

- 재개발 기능점수 산정

재사용반영 전 기능점수	재사용 소프트웨어 평가노력	총 변경율	재사용 난이도	재사용 소프트웨어 친숙도	재사용반영 후 기능점수

※ 기능점수 목록 및 재사용산정 내역은 첨부하여 제출할 것 (총 기능점수 = 신규개발기능점수 + 재사용반영 후 기능점수)

• 보정계수 산정

구 분	내 용	비 중	보정계수 값	비 고
어플리케이션 유형	유형	비 중		비 중의 합은 100%임
	업무처리용	()%		
	과학기술용	()%		
	멀티미디어용	()%		
	지능정보용	()%		
	시스템용	()%		
	통신제어용	()%		
	공정제어용	()%		
개발단계	()분석, ()설계, ()구현, ()시험			해당 단계에 O표시를 함
언 어	언어	비 중		비 중의 합은 100%임
	분류 1	()%		
	분류 2	()%		
	분류 3	()%		
	분류 4	()%		
규모				
품질 및 특성	보정요소	영향도		
	분산처리			
	성능			
	신뢰성			
	다중사이트			

※ 언어보정은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총 영향도 = 분산처리 영향도 + 성능 영향도 + 신뢰성 영향도 + 다중사이트 영향도

• 개발원가 산정

- 개발원가 =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단위 : 원)

단 계	단계별 단가	총 기능점수	기능점수				개발원가
			언어	어플리케이션유형	규모	품질 및 특성	
분석	94,511						
설계	119,382						
구현	159,177						
시험	124,357						
계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비

(단위 : 원)

구분	산출내역	금액	비고
개발원가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 + 제경비) × ()%		
소계			
부가가치세			
합계			

2) 단순물품구매비

가. 소프트웨어 구매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물품 분류 번호	물품 식별 번호	모델 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설치 장소	국산 여부	GS 인증 여부	공개 SW 여부	비고
DBMS												
운영체제												
WEB/WAS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 ※ 구분은 DBMS, 운영체제, WEB/WAS, 백업, 리포팅툴, 검색엔진, 보안, 기타 중 해당품목 기입
-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 ※ GS 이외의 인증내역이 있을 경우 비고란에 기입

나. 하드웨어 구매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물품 분류 번호	물품 식별 번호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설치 장소	국산 여부	비고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 구분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보안, 백업장비, 기타 중 해당품목 기입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다. 기타

(단위 : 원/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물품 분류 번호	물품 식별 번호	모델명/ 제조사	규격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설치 장소	국산 여부	비고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 물품분류번호와 물품식별번호는 조달청 나라장터 목록정보시스템을 참고하여 작성



별첨 4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업명		하도급 사업명	
수급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금액 (B)	원
계약기간		하도급 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방식,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 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별첨 5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기관등이 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소프트웨어사업의 계획 수립

제3조(예산편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기능 및 비기능 요구사항,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 등 과업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른 제안서 보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대상자에게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서 보상예산으로 별도 확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발주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9월말까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 중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총사업규모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의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를 산정하여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2.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정부예산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
3. 공공기관에서 자체예산(수입금 활용 포함)으로 추진하는 소프트웨어사업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 제출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5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이하 “종합관리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의 예산계획에 포함된 과업의 내용과 범위
2. 예상 사업기간 및 예상 발주시기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말까지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확정된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발주자가 매년 12월말까지 차년도 소프트웨어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발주상황을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사업이 제때에 발주될 수 있도록 발주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5조제5항에 따라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자문단을 통해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영 제36조제4호의 “그 밖에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3. 소프트웨어 기능개선·추가 또는 변경이 없는 단순 유지관리·운영사업

제7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 구매 대상 사업은 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는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며,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로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미만인 소프트웨어도 포함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등록 소프트웨어
2. 법 제20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소프트웨어(GS)
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 인증(CC) 소프트웨어 및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소프트웨어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NET) 인증 소프트웨어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신제품(NEP) 인증 소프트웨어
- ④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 ⑤ 소프트웨어 품목에 다수의 제품이 존재하며 그 중에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1개라도 있을 경우에는 직접구매 대상으로 한다.
-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일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총사업규모 미만이거나 제3항에 따른 대상 소프트웨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직접 구매 할 수 있다.
- ⑧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하며, 직접구매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사후기술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약약을 해당 소프트웨어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의 제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3항의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구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40조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외사유를 적용하여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조달청장에게 발주 또는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규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2. 국회, 감사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조 각 항에서 명시된 상위 관할구역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같은 법

제6조제2항의 주무기관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5.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서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검토 요청하여야 한다.

6. 제2호 내지 제5호외에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 또는 계약하는 경우로서, 상위감독기관이 없는 경우는 제2호를, 상위 감독기관이 있는 경우는 제4호를 준용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2항의 직접 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검토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계약정보 등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는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 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영 제5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현황 등을 종합 관리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별표 1의 소프트웨어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활용하여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적정 사업 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과업심의위원회는 별표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위원별 산정서,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및 별지 제5호서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을 명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단,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요청서 작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국가기관등의 장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과업 규모를 산정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분석·적용기준 및 별지 제6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를 활용하여 요구사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제안서 작성비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재개발비 등에 대한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 투입인력의 수 및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사전협의 대상 및 예외)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협의한 결과를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7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 사업의 예외에 대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4조제2항을 따른다.

제13조(표준계약서의 사용 권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등의 장과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하도급 계약 포함)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4항에 따라 우대 할 수 있다.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제14조(작업장소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제외)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 검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보안요구사항 등이 유사한 작업장소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 실적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법 제21조에 따르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또는 이와 동등한 국내외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제15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계약서의 내용) 영 제30조제7호의 “그 밖에 계약의 공정성과 계약내용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을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계약의 갱신
3. 선급금이나 기성금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각각 그 지급의 시기, 방법 및 금액

제16조(제안서 보상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은 총사업예산이 20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대상사업인 경우 제안서 보상 기준 등 제안서 보상 관련 사항을 입찰공고 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총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안서 보상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1.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2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사업 예산의 8/1000, 5/1000를 각각 지급
2.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예산의 13/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2인 이상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된 경우 제3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제17조(제안서 보상 대상자 선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1항에 따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100분의 85 이상으로 낙찰자와의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차이가 5점 미만인 자로서 기술능력 평가 고득점 순으로 상위 2인 이내(이하 “제안서 보상 후보자”라 한다)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사업의 특성, 제안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를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서 보상 후보자가 2인일 경우 2인을 모두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제2항을 준용하여 판단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안서 보상 대상자가 확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안서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서 보상 대상자의 보상요청이 없으면 제안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보상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제안자의 동의 없이 해당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서 보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

제1절 소프트웨어사업의 관리

제18조(사업관리)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과업내용에 기초하여 계약 이행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관리 등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사업관리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상세 요구사항을 포함한 추진단계별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및 위험, 산출물 등을 확인 및 통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사업대가를 산정한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하여는 투입인력의 수 및 투입기간 등을 관리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검사하기 위한 합동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을 허용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에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별지 제7호서식) 제출 요청
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경우 변경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제20조(하도급계약의 승인신청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상대자가 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계약상대자가 법 제51조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하도급 계약 승인을 거절 하거나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마련한 표준계약서(다만,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 한함)
2. 소프트웨어사업자가 하도급법 제2조제2항의 원사업자인 경우 : 하도급법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21조(하도급계약의 승인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3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 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10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물품(상용소프트웨어를 포함한다)의 단순 유지관리 하도급 계약으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제출한 하도급 계획서와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도급 승인 계약 신청과 동시에 해당 하도급을 승인 한 것으로 본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 계약의 승인이 거절된 경우 1회에 한하여 거절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완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계약 승인을 재요청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재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제22조(하도급계약의 변경승인) ① 제21조에 따라 승인받은 하도급 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변경 승인을 요청해야하며,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하여 판단한다.

1.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승인받은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상 중요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개발·운영관리에 관한 사업으로 중대한 장애에 긴급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으로 대기업의 하도급(다시 하도급을 포함한다)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대기업이 하수급인 또는 재하수급인으로 긴급참여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하도급 관리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1조제7항에 따라 하도급 비율, 다시 하도급 여부 등 하도급 제한 규정 준수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된 하도급 및 다시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을 포함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하도급 준수실태를 확인한 결과 미흡하거나 승인 받은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상대자가 국가기관등이 전자적으로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확인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법 제51조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하도급 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과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계약 반영 예외사유) 법 제50조제2항의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경미한 과업변경에 해당하여 계약 등에 반영하지 아니하기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한 경우

2.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재난,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변경 내용을 계약 등에 반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제25조(과업내용의 확정 시기 및 기준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업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에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일정 부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체결 전까지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 2인 이상(해당 국가기관등에 소속되지 않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이 사전심의한 결과를 과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간소화된 방식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총 사업금액이 1억원 이하인 사업

2. 상용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표준화하여 보급할 목적으로 개발한 정보시스템을 구매하는 사업

3. 기존에 과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던 사업을 변경없이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과업 내용을 소프트웨어사업 발주

전까지 제안요청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체결시 국가기관등의 장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업수행계획서 또는 과업내용서 등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과업 내용이 구체화되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이들 구체화된 문서의 내용을 확정된 과업내용으로 본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에 따른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복수로 설치하고 각 위원회별로 심의대상을 분리할 수 있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과업내용 변경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단계별 발주를 할 수 있다.

제26조(과업내용의 변경 신청) ①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과업변경 요청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체의 동의를 받아 대표구성원이 신청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과업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2항의 단서를 준용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27조(과업내용 변경 심의 기준 등) ① 과업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영 제47조제1항제2호 따른 과업내용 변경이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의 조정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았을 때 과업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변경 사유의 적정성

2.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조정의 적정성

②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과업범위는 과업내용 변경을 확정하기 위한 과업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까지 확정된 제25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과업내용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제28조(과업내용 변경 결과 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47조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의결결과 및 조치계획을 통지하고 그 사항에 대해 별지 제9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영 제47조제5항에 따른 국가기관의 조치계획을 근거로 계약변경요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의 장은 계약변경요청을 받은 30일 이내에 조정을 하여야 하며, 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제5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1.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재심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29조(감리)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계약당사자간 합의한 문서에 대한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감리계획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결과로 도출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인수 및 종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수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31조(성과관리)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제32조(산출물의 활용) ①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반출요청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반출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영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확인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국가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 제3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2절 소프트웨어사업의 감독 및 개선권고

제33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 감독)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고 따른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 마감일이 1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마감일 이전에 조치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영 제6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은 관련 자료의 분석 및 사실관계 검증 등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 대상 및 기준) ①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대상은 영 제21조 각 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장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상용소프트웨어를 서비스 형태로 제공 받아 이용하는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43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요구사항 상세화
3. 법 제45조에 따른 적정 사업기간 산정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정보제공
5. 법 제4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원
6. 법 제50조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설치·운영
7. 법 제5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보상
8.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지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35조(세부사항)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지침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 3]

I.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II.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㉞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 이상	100% 미만~80% 이상	80% 미만~60% 이상	60% 미만~50% 이상	50% 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㉟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 이상	70% 미만~60% 이상	60% 미만~50% 이상	50% 미만~40% 이상	40% 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㉞, ㉟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㊱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III. 계약의 공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할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 이상	95% 미만~90% 이상	90% 미만~85% 이상	85% 미만~80% 이상	80% 미만~70% 이상	70% 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IV.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원	%
2				...~...	원	%
합계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 - 물품구매 예정액(B)) × 100 						
<p>「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p>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p>※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별첨 6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4조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 호의 심사 및 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의3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따른 제안서의 평가
5.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2조 각 호의 심사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상용소프트웨어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따라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상용소프트웨어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실시하여 구매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배점한도 이외에 5점 이내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1. 「저작권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 당해 소프트웨어사업과 관련된 기술자료를 임치한 경우
2. 당해 소프트웨어사업 결과물인 기술자료의 임치를 약속하는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2등급 이상의 유효한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한 경우
4.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최초제안자에 해당하는 경우
5.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에 별표 1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지분을 이외에 기술지원, 인력양성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6.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 또는 서비스수준협약 방식으로 산정한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서는 투입공수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할 수 없다. 다만, 관제, 고정비 방식의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 등 인력관리 성격의 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상용소프트웨어의 품질·성능·효율등이 표시된 품질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



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정보통신업무 관련 기술직렬 1급 이상의 임직원 또는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직렬 2급 이상의 임직원으로서 해당분야 및 직무경력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기술 분야 교수 또는 연구위원급 이상인 자
 3. 기술직렬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기술사 자격이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직렬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및 직무 경력자
 4. 대학 해당분야 부교수 이상인 자
 5. 그 밖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입찰참가자의 사외이사, 심사평가 대상사업의 용역·자문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및 국가기관등의 사업자 선정 평가와 관련한 부정행위·비리 사실이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성평가를 실시할 때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⑥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항목별 자가점검표,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⑦ 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입찰참가자의 타당한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에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국가기관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할 때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에서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국제표준의 적용 등) ① 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표준인 ISO/IEC 25010, ISO/IEC 25023, ISO/IEC 25041 등을 참조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장은 이 기준의 원활한 시행·적용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지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입찰공고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별지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원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text{하도급금액비율} = \frac{\text{하도급예정액}}{(\text{입찰금액} - \text{단순물품구매예정액})}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 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 _____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 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 _____				
대표자 : _____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F^AQ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FQ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Q1 민간 발주 사업의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하도급 제도가 적용되나?

A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하도급 제도의 경우 국가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만 적용되며, 민간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적용 의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소프트웨어 기간제·단시간 종사자(소위 프리랜서)와의 계약을 하도급으로 볼 수 있는가?

A 프리랜서와 수급인과의 계약형태가 고용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업체 소속의 직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이 아니나, 개인사업자를 등록한 프리랜서와 주사업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하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Q3 SW기업과 제조사(또는 개발사) 간에 '기술지원 확약'을 맺을 경우 (재)하도급에 해당되는지?

A 기술지원 확약서의 내용이 도급받는 SW사업의 과업을 다른 SW사업자에 도급하는 계약이 체결되고, 이에 대한 대금이 지급될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상의 (재)하도급에 해당됩니다.

★ 단, (재)하도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인 SW사업자가 발주기관에게 SW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하도급 사전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이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를 위해 마련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제도 등 관련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의) '기술지원 확약'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하도급 제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Q4 수급인이 '물품'의 구매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는 하도급에 해당하는가?

A 도급이란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대금이 지급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하므로 수급인이 물품의 구매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한 행위 즉 물품의 구매의 완성을 대가로 대금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하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Q5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물품'을 제조사가 아닌 소위 협력사(BP: Business partner), 총판 등 유통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이는 하도급인가? 물품 단순 매매계약인가?

A 매매계약은 계약 당사자(구매자와 판매자)간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이 제조사가 아닌 유통공급자에게 구매하더라도 계약 당사자간 계약이 매매계약일 경우 매매계약에 해당합니다.

Q6 수급인이 직접 제조사 등과 '물품'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물품의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용역을 포함한 경우 이는 하도급인가? 물품 단순 매매계약인가?

A 물품의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용역을 포함하여 '물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물품 구매비용과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등의 비용 모두를 하도급 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 전체 사업금액 1천만원에서 물품 구매금액이 400만원,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150만원이고,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용역 계약을 한 번에 체결하였을 경우
 ⇒ 하도급 비율은 55% (전체 SW사업금액 1천만원 대비 물품구매비용 400만원 + 설치 및 커스터마이징 비용 150만원 = 총 550만원으로 총SW사업금액 1천만원대비 55%가 하도급에 해당)

Q7 하도급 제한 비율(SW사업금액의 100분의 50)산정 시,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하도급 제한 비율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과업(물품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의 비용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가? 또한 물품 등의 공급에서 용역이 수반된 물품 매매계약 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가?

A 네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하도급 비율은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계약 상대자(수급인)*의 물품(HW, 상용SW, 설비)의 단순 매매계약**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법 제51조제2항 각 호의 물품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용역 비용,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비용은 하도급 제한 비율 산정 시 포함되며, 용역이 수반된 물품 매매계약 금액도 포함됩니다.



* 계약상대자(수급인) : 국가기관등의 장과 SW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 계약상대자(수급인)의 물품 단순 매매계약 : 물품 등의 공급관계에서 용역이 수반되지 않은 물품 매매계약



Q8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구성 시 하도급 비율 산정 방법은?

A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하도급 비율 제한을 두지 않으며 공동수급한 전체 사업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자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수급형태별 하도급 제한 비율 적용예(24쪽) 참조

Q9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물품(상용SW포함) 구매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금액에서 해당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하고 하도급 제한 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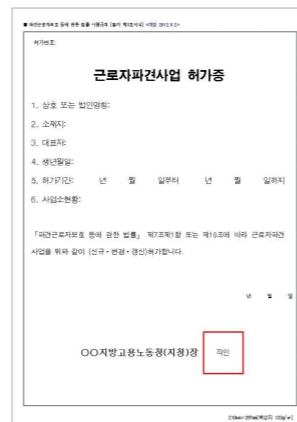
A 아닙니다. 계약상대자(수급인)의 물품 단순 매매계약(물품 등의 공급관계에서 용역이 수반되지 않은 물품 매매계약)에 한하여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물품(상용SW 포함)의 구매를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에 해당하므로 해당 물품 구매금액은 전체사업금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하도급 제한 비율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Q10 SW사업자가 하도급 비율 제한 예외사유를 포함하여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타당성 검토하는 기준은?

A 발주기관에서 SW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법 제5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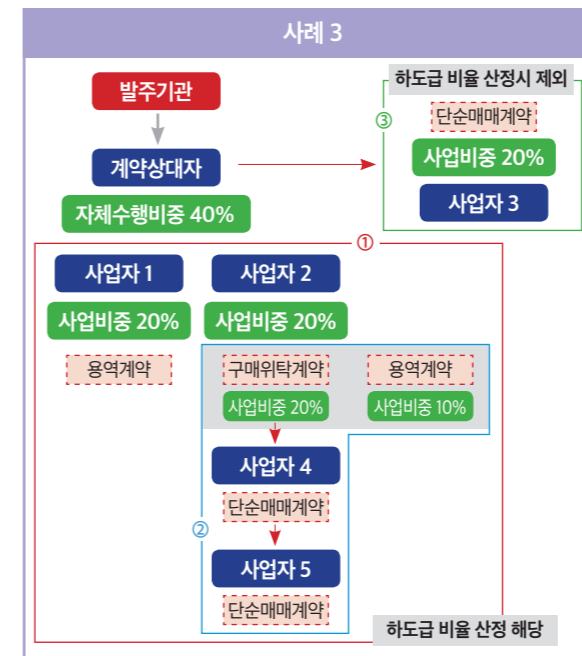
Q11 인력 파견계약 즉, 인력 파견업에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파견 받은 인력을 활용할 경우 하도급 해당 여부는?

A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도급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664조)입니다. 따라서, 정식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증을 보유한 사업자와의 파견계약을 통해 인력 수급을 받는 경우는 하도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등록파견 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단순한 인력수급계약은 하도급에 해당합니다.



Q12 하도급자가 제조사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경우, 재하도급에 해당하는가?

A 용역이 수반되지 않은 단순매매계약(단순 유지관리 서비스계약 포함)의 경우 하도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 매매 계약이더라도 구매 계획*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용역계약, 용역 수반 매매 계약, 단순매매 계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 사업단계와 내용에 따라 하도급 비율 산정 여부가 상이합니다.



①의 사례의 "사업자 1, 2"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와 용역계약 및 용역을 동반한 구매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므로 하도급 산정 비율에 포함됩니다.

※ 계약상대자의 구매위탁계약 또한 하도급 산정 비율에 포함 됩니다.

②의 사례에서 "사업자 4, 5"는 단순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자 2와 사업자 4간의 관계는 재하도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직접 구매계약 체결이 아니므로 하도급 산정 비율에는 포함됩니다.

※ $\frac{\text{하도급 비율(사업자 1 + 사업자2)}}{\text{(총사업금액 - 직접 물품 매매계약 합)}} = 50\%$

③의 사례에서 "사업자 3"은 계약상대자가 단순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이므로 하도급 산정비율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총 사업금액에서 단순매매계약의 합을 제외한 비중이 하도급 비율 산정 대상이 됩니다.



Q13 입찰시에 모든 입찰자(소프트웨어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가?

A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개정('20.12.24 시행)으로 입찰시에 제출했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서식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에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받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 한하여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합니다.
해당 서식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4호서식으로 이동하였습니다.

Q14 하도급자가 해외사업자로 국내 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하도급 적정성 판단항목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예컨대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등)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A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합의를 통해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등 변경할 수 있습니다.

Q15 발주기관장은 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 대비 입찰자가 하도급하려는 사업금액 비율이 전체사업금액의 10% 이상인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것을 입찰 공고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체 소프트웨어사업금액에서 용역이 수반되지 않은 수급인의 물품 직접 매매금액을 제외한 뒤 산정하여야 하는가?

A 하도급 제한 비율(100분의 50)의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용역이 수반되지 않은 수급인의 물품 직접 매매 금액을 제외한 뒤 산정합니다.

Q16 물품 구매·설치 금액이 총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시켜야 하는지?

A 하도급하려는 물품의 구매·설치 금액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6항에 따라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동수급체가 아닌 형태로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제안서에 명시 하여야 합니다.

Q17 하도급 과업 중 비SW관련 사업금액이 10%를 초과할 경우, SW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켜야 하는지?

A 입찰 공고 시 입찰참가 자격요건에 따라 결정될 사항이며, 다른 영역이 복합된 사업의 해당부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각 사업을 분리하여 발주하거나,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Q18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최대 5인 이하로 공동수급자를 구성할 수 있는데, 사업금액이 10%를 초과 하는 사업자가 5인 이상일 경우 기준을 어떻게 정해야 하나?

A 공동수급 참여 기준은 1. 사업금액 비율이 높은 순, 2. 과업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간에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Q19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또는 SWIT의 하도급관리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기존의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간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할 경우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나?

A 소프트웨어 진흥법 상 발주기관의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이용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타 부처 법령 등에서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관리시스템의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불가피한 사유를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자적 형태의 하도급 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기관에서는 관련 법령등을 검토하시어 사용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예산지침 또는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예산집행지침 등에서는 SW용역 계약에서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구현되어 있지 않아 업무수행이 곤란하거나, 기 구축된 시스템 활용이 보다 효율적인 경우 등 불가 피한 경우 외에는 발주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하도급 관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비, 노무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Q20 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에서 주사업자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하지 않아 하도급 적정성 판단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기술지원업체가 발주기관에게 기술지원 협약서만을 제출하였을 때, 주사업자와 기술지원업체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나?

A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소프트웨어 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주사업자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발주기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하도급 적정성 평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Q21 개정 전 고시에서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입찰시와 계약체결시 2번 나눠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개정된 고시에서는 계약체결시에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시에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가?

A 개정된 고시는 모든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계약체결시에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입찰시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시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받는 것을 원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입찰자)에 한하여 물품 공급 약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관련 서식[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Q22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권장하는 이유는?

A 표준하도급계약서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작성한 약관으로 공정위로부터 공정성을 승인 받은 계약서를 뜻합니다.
표준약관을 일정한 거래분야의 가이드라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표준약관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사업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하도급 계약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할 경우 사업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및 제3조의4

Q23 하도급제한 예외사유(신기술·전문기술의 요건 등)의 판단주체는 누구인지?

A 계약상대자는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전문기술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발주기관에 신청하며, 그 인정에 대한 판단주체는 발주기관입니다.

Q24 하도급 시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신청자는 수급인이 하는지 아니면 하수급인이 하는지?

A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과 관련 서류를 같이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을 신청합니다. 하수급인이 재하도급을 할 경우에도 전체 사업의 책임이 있는 계약 상대자인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재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가 승인 신청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재)하도급 하려는 각 구성원이 (재)하도급 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25 법 제51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하도급 제한규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도록 되었는데, 관리·감독 주기 및 방법 등은 어떻게 하는지?

A 발주기관은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의 관리·감독을 위한 방법·절차 및 주기 등 세부사항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Q26 하도급 및 재하도급 변경승인신청은 누가하여야 하는지?

A 하도급 및 재하도급 승인신청과 마찬가지로 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인 수급인이 신청하여야 합니다. 한편,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가 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하도급을 변경하려는 각 구성원이 하도급변경승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Q27 하도급 및 재하도급 변경신청이 거부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

A 하도급 및 재하도급 변경승인 신청에 대하여 국가기관 등이 거절통지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재판단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단의 절차는 하도급 승인절차를 준용합니다.
재판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거절통지를 받은 경우, SW사업자(계약상대자)는 기존 하도급승인을 받은 내역대로 계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Q28 지침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유의 경우에만 하도급 변경 승인을 할 수 있나?

A 아닙니다. 그 밖의 하도급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 변경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적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적절성의 여부를 평가하여 사유가 적절치 않을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Q29 하도급 금액, 기간, 과업이 소폭 변경에 불과한 경우에도 하도급계약 변경신청을 받아야 하는지?

A 하도급 금액이나 기간에 대한 변경 폭이 적은 경우라도 법에서 정하는 50% 비율제한을 준수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금액, 기간, 과업의 경우 계약상 중요한 내용이므로 소폭 변경의 경우라도 반드시 변경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2조

Q30 분쟁조정 신청은 누가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을 통해 조정이 가능한지?

A 하도급 분쟁 조정은 수급인(원사업자)과 하수급인(수급사업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분쟁의 당사자인 사업자 간에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분쟁은 사업자간의 분쟁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발주기관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며, 따라서 발주기관이 조정의 주체가 되거나 조정신청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

2021년 1월 인쇄
2021년 1월 발행

발행인 김창용
발행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787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0
기획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권상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이상수, 김성미
Tel 043.931.5353 **Fax** 043.931.5329

- 본 가이드 내용의 무단전제를 금하며, 가공·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부문 SW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가이드」이라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가이드는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 ▷ 정보센터 ▷ SW제도자료실
- 본 가이드의 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공SW수발주상담센터
Tel : 043.931.5353

